

경운대학교 대학입학전형회피·배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입학전형을 진행함에 있어 회피·배제에 대한 원칙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피'라 함은 수험생과 친족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제'라 함은 수험생과 친족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평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친족' 및 '특수한 관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다.
4.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교원 또는 직원과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사정관, 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위촉사정관을 말한다.

제3조(회피·배제 대상) ①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수험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다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②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수험생을 그 수험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③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수험생을 그 수험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④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회피·배제방법 및 책임) ①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회피'의 경우 수험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는 모집시기별 입학전형 실시 이전에 각 세부시행계획에서 명시한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말정산자료, 인사카드자료, 가족장학사항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 및 서류를 통해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로 확인된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는 대학입학전형 평가 및 관리 업무에서 배제한다.

③ 대학입학전형업무에 참여 중인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에게 회피·배제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④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회피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5조(회피·배제 시기) ① ‘회피’는 자진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서접수 후 평가하기 전에 안내하여 자진신고 하도록 한다.

② ‘배제’검증은 지원자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서류검증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이후부터 평가하기 이전의 기간에 실시한다.

③ 재검증은 평가기간 중에 미확인 배제 사항이 있는지를 재확인한다.

④ 사후검증은 전형이 마무리되고 최초합격자 발표 이전에 실시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시행 상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규정심의요청안을 정한다.

제7조(준용) 대학입학전형회피·배제에 관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0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